

※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,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(단,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)
 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 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선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"세대주 성명 및 관계"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.

■ 공통 구비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			
특별공급공통서류	○		특별공급 신청서, 특별공급 약약서 개인정보 수집·이용동의서, 서약서	본인	· 견본주택 비치
	○		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	본인	· 견본주택 청약신청자(정보취약계층)는 청약접수 시 제출 ※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접수 및 대리계약 불가
	○		인감도장	본인	· 인터넷 청약 신청한 당첨자는 계약 시 지참 필수 · 견본주택 청약신청자(정보취약계층)는 청약접수 및 계약 시 지참 필수
	○		신분증	본인	·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
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·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,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,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본인	·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, 변동사유 및 발생일(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, "전체포함"으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본인	·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하여 '상세'로 발급
	○	○	혼인관계증명서	본인	·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 확인 ·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본인	· 국외 거주기간 여부 확인(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)으로 발급 ※기관추천 청약신청자 및 당첨자의 경우 생략
	○		청약통장순위(가입)확인서	본인	·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(가입)내역 발급 또는 '청약HOME ※ 인터넷 청약으로 청약한 경우 생략
	○		해외체류(단신부임)관련 증빙서류	본인 및 세대원	· 당첨자(청약신청자) 본인만(혼자)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현재 체류 중이거나, 체류한 경우로서 해당 해외 체류 기간을 국내 체류 기간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[아래표 '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증빙서류' 참조
	○		복무확인서	본인	·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이 기타지역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 군복무 기간(10년 이상) 명시
○		주민등록표등본	배우자	·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(상기 본인 등본 발급 유의사항과 같이 '전체포함'으로 발급)	
○		가족관계증명서	배우자	· 재혼가정의 자녀(본인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)로서 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·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주민등록표등본 상 당첨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*본인 및 배우자,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포함)전부 공개하여 '상세'로 발급	

■ 특별공급 제출서류

구분	서류유형	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			
기관추천 (일반)특별공급	-	-	해당 기관별 추천 명단	-	·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확인*해당기관의 추천대상자는 사업주체(견본주택)에서 확인 가능
다자녀가구특별 공급	○		다자녀가구 특별공급우선순위 배점기준표	-	· 견본주택 비치
	○		주민등록표초본	(피부양)직계존속	·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(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 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 확인) *주소변동사항, 변동사유 및 발생일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, '전체포함'으로 발급
	○		한부모가족증명서	본인	·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
	○		혼인관계증명서	자녀	· 자녀의 연령이 만18세 이상 ~ 만19세 미만인 경우 *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'상세'로 발급
	○	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·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(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)제출*임신진단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(임신확인서 인정안됨)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	· 임신의 경우 (견본주택 비치)
신혼부부특별공급	○		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입양의 경우
	○	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	·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(청약신청자) 및 성년자(만 19세 이상 포함)인 세대원 전원 제출 (발급처: 국민건강보험 T: 1577-1000)*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필수
	○	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성년자인세대원 전원	·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(청약신청자) 및 성년자(만19세 이상 포함)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[아래표-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] *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
	○		부동산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 전원	·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제출 *발급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
	○		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·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(국내의료기관으로 한정) 제출 *임신진단서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(임신확인서 인정안됨)
	○		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	본인	· 임신의 경우 (견본주택 비치)
	○		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입양의 경우
○		비사업자확인각서	해당자	· 소득증빙대상 세대원(성년자)전원 중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 (견본주택 비치)	

생애최초 특별공급	○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본인 및 성년자인세대원 전원	·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(청약신청자) 및 성년자(만10세 이상 포함)인 세대원 전원 제출 *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
	○	소득증빙서류	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	·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첨자(청약신청자) 및 성년자(만19세 이상 포함)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· 당첨자(청약신청자)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·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
	○	부동산소유현황	본인 및 세대원 전원	· 소득기준은 초과하나,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경우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제출 *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
	○	혼인관계증명서	자녀	·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'미혼인 자녀'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*성명,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
	○	주민등록표초본	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	·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,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 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에 포함하는 경우 *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*주소변동사항, 변동사유 및 발생일, 세대주 및 세대주 와의 관계 포함하여, '전체포함'으로 발급
	○	주민등록표초본	배우자	· 가구원에 해당하는 직계존속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 *주소변동사항, 변동사유 및 발생일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, '전체포함'으로 발급
	○	입양관계증명서	본인 또는 배우자	· 입양의 경우
	○	비사업자확인각서	해당자	· 소득증빙 대상 세대원(성년자) 전원 중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(건분주택 비치)
노부모부양 특별공급	○	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	본인	· 건분주택 비치
	○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존속	·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*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*주소변동사항, 변동사유 및 발생일, 세대주 및 세대주 와의 관계 포함하여, '전체포함'으로 발급
	○	가족관계증명서	피부양직계존속	· 피부양 직계존속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하여 '상세'로 발급
	○	출입국사실증명서	피부양 직계존속 비속	·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피부양인 전원 제출(배우자 제외) *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
	○	혼인관계증명서	피부양 직계비속	· 만18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*성명,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하여 '상세' 로 발급 *만30세 이상 미혼자녀 1년 이상 주민등록등본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(혼인여부 확인)
○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 직계비속	·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*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, 변동사유 및 발생일(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),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, '전체포함'으로 발급	
대리인 신청시추가 사항	○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당첨자(청약신청자)	· 용도 :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또는 아파트 계약 위임용
	○	위임장	당첨자(청약신청자)	· 건분주택 비치
	○	신분증, 도장	대리인	·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내거소신고증(재외동포), 외국인등록증(외국인)
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(소명자료)	○	사업주체가 필요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	무주택 소명 등	·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 기준에 따른 해당 서류로서 [주택공급에 관한 규칙] 제53조에서 정하는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기타 증명 서류(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, 무허가건축물확인서 등) · 당첨자 및 세대원의 소유 주택현황 사례가 다양하여 사업주체가 추가로 증빙을 요구하는 서류
			당첨사실 소명 등	·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

※ 상기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,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 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
※ 주민등록표등·초본 발급시 '세대주 성명 및 관계'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, 세대주 여부,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등을 위해 모두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서류발급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.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(배우자, 직계 존·비속 포함)으로 간주합니다.

■ 해외근무자(단신부임) 입증서류 (단신부임 청약신청 및 당첨자는 상기 공통서류 외 추가 제출)

서류유형 필수	추가(해당자)	해당서류	발급기준	서류제출대상 및 유의사항
○		해외근무 증빙서류	본인	·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: 파견 및 출장명령서 ·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: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,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· 근로자가 아닌 경우 (반드시제출) : ① 비자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· 유학, 연수, 관광,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, 생업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
○		출입국사실증명서	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	·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(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)
○		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	본인 및 세대원	·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 불가능한 경우*비자발급내역, 재학증명서 등 체류 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, 세대원이 당첨자(청약신청자)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(계속하여 90일, 연간 183일을 초과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